

『구미시정기시장및임시시장의개설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8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20일

제1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황 종 철

나. 제안이유

- 시장 시설기준을 상위법과 일치시키고 자의적인 배상 규정을 삭제하며 이용자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료 반환 조항을 개정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상위법에 규정된 시장 시설기준과 조례상의 기준을 1,000제곱미터 이상으로 일치시켰으며(안 제3조)
- 자의적인 배상기준 규정을 삭제하고(안 제14조)
 - 명확하지 못한 부담금 기준을 삭제

- 기존에 반환받지 못하던 사용료를 반환신청을 통해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였음(안 제16조)
 - 천재지변과, 공익상 필요로 인해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, 시장 사용을 해지한 경우 사용료 반환을 할 수 있도록 개정
 - 사용료 반환을 일할계산에 의해 받을 수 있도록 규정, 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반환신청을 하여야 함을 명시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 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」
 - 「유통산업발전법」, 「민법」
-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최 명 호

○ 본 조례안은

구미시가 개설한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운영,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,

- 시장 시설기준을 상위법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, 시장의 사용허가 신청시 사용보증금 납부 규정 삭제, 시장 사용료 반환 조항을 정비하여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고,
- 기타 띄어쓰기 및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